##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22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조승환·이종배·김성원

이성권 · 서일준 · 곽규택

정희용 · 안철수 · 김승수

서범수 · 이달희 · 임이자

김도읍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빈집의 범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이하 "무허가 주택"이라 함)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구도심 등에는 빈집의 상당 부분이 무허가 주택임에도 현행법령 상 무허가 주택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무허가 주택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도심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노 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주택"을 "주택(「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 •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	
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u>주택</u> 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	택(「건축법」 제22조제2항에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
주택은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
	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주택을 포함한다)-
	<u>.</u>
	<u>.</u>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